

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당연직 위원인 담당업무 국장의 명칭을 조직개편 때마다 개정하고 있음. 이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조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’으로 개정하고자 함
- 조문상 용어·표기 오류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위원장 직책 명칭 변경(안 제7조제3항)
- 나. 용어·표기 오류 정비(안 제1조 등 총 17개 조문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2. 23.~2026. 3. 16. (21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

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9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”로, 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식품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”을 “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를 “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로, “법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를 “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로, “영업신고”를 “영업신고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금의 구성)”을 “(식품진흥기금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밖에”를 “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징수한 과징금의 기금으로” 를 “기금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세입·세출예산외” 를 “세입·세출예산 외” 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 중 “취급하기위하여” 를 “취급하기 위하여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후단 중 “1이상” 을 “1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
중 “경제문화국장” 을 “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” 으로 한

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 를 “총괄한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“직무를수행” 을 “직무를 수행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해” 를 “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

부분 중 “해촉 할” 을 “해촉할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

를 “그 밖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월이내” 를 “1개월 이

내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간사는업무담당” 을 “간사는 업무담당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본문 중 “소집하고자 하는” 을 “소집하려는” 으로 하고,

같은 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 를 “그렇지 않다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증빙서류” 를 “증명서류” 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 를 “제1항” 으로, “「하남시 재무회계 규

칙」” 을 “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 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 시행” 을 “실시 이전에 융자

계획을 수립·시행” 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및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를 “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시장은 용자한도액”을 “용자한도액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체결한금융기관”을 “체결한 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식품위생농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식품위생농업과장 나 회 숙
	팀장 직위·성명	위생관리팀장 김 정 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 동 헌 (031-790-532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남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----- ----- ----- ----- 식품진흥기금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. 2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란 위생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----- ----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----- -----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----- 영업신고를 ----- -----. 2. -----

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
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
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
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
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~ 3. (생 략)
4. 그 밖에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귀속절차) 법 제82
조제5항 및 「건강기능식품에
관한 법률」 제37조제4항에 따
라 징수한 과징금의 기금으로의
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
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하
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
다)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
리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
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
외로 처리한다.

② (생 략)

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
출납·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
취급하기위하여 기금을 금융기
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----- 필요한
-----.

제3조(식품진흥기금의 조성) 식품
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
다)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 밖의 ----

제4조(기금의 귀속절차) -----

- 기금-----

-----.

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

----- 세입·세출예산
외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취급하기 위하여 -----
-----.

제7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8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

제7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----- 1
이상 -----.

③ -----
----- 식품진흥기금 업무를
담당하는 국장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-----

----- 총괄한다.

② -----

직무를 수행-----
-----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따라 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해촉할

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
3. ~ 5. (생 략)

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위촉 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② (생 략)

제11조(회의) ① (생 략)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 략)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 그 밖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 1개월 이내-----
-----.

제10조(간사 등) ① -----

- 간사는 업무담당 -----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소집하려는

-----.
----- 그
렇지 않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-----

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5조(회계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「하남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용자계획)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용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하남시 관할 구역 내에서 시설개선 또는

범위-----

-.
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 증빙서류-----
---.

제15조(회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 ----- 「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
-.

제16조(용자계획) -----

----- 실시 이전에 용자계획을 수립 · 시행-----
--.

제17조(용자대상) -----
-----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18조(융자신청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·절차·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제19조(융자금의 예치)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.

제18조(융자신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융자한도액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융자금의 예치) ① -----
----- 필요한 -----
체결한 금융기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요인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안전환경국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